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106
----------	--------

제출년월일 : 2019. 09.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존속기한 연장

- 당초 2019. 12. 31. → 변경 2024. 12. 31.

나.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추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7조(기금 운용심의회 설치 및 기능) 제2항(심의회 심의 사항)의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추가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2)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등)
-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9. 6. 28. ~ 7. 17. (제출된 의견 없음)
- 2)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2019년 12월 31일”을 “제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사항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19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7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4. (생략)</p>	<p>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4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7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u></p> <p><u>5. (현행 제4호와 같음)</u></p>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존속
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연장과 상위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그 안의 시행에 따른 비용 또는 재원조달 등이 일어나지 않음

4. 작성자 : 교통건설국 도로과 하주성 (☎ 3153-9782)